

등록번호	지역건강과-1644
등록일자	2016. 1. 25.
결재일자	2016. 1. 2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모자보건팀장	지역건강과장	보건소장
임진희	박현숙	김선찬	01/26 이준영
협 조			

아름다운변화, 열린구정, 행복도시 서대문

2016년도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계획



서대문구
지역건강과

2016년도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계획

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32조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- 2016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
- 지원대상의 자율적 범위 확대(보건복지부)
- 서울시 '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계획(안)
 - 서울시 건강증진과-1719(2016.01.21.)호

II 추진경과

- '06. 4. : 산모·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시행
- '08. 2. :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(금융기관 위탁운영)
- '12. 2. 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
- '12. 8. : 제공지관 등록제 시행
- '13. 2. : '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으로 사업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가격 자율화 시행
- '15. 1. :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회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
- '15. 7. :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도입('15.7월)
- '06~'16년 : 지원 대상 기준 조정

구분	'06년	'07년	'08년	'09년~'14년	'15년	'16년
지원 기준	최저생계비 130%이하 둘째	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% 이하	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% 이하	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	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% 이하	기준중위소득 80%이하

□ 2016년도 변경(확대) 사항

- 지원대상 기준 확대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% 이하 → 기준중위소득 80%이하로 상향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의 예외 지원 신설

III

추진 방향

- 지원대상 확대로 출산분위기 조성 및 고용확대



※ 지원대상 확대사유

- 국가매칭 사업비 집행률 낮음
 - 전국기준 14년 예산집행율 89.4%(서대문구 예산집행율 96.3%)
 - 전국기준 15년 예산집행율 80.3% 추정(서대문구 예산집행율 82.9%)
- '15년 전국 17개 시도중 예외지원 안하는 지역은 서울시 포함 3개지역(서울, 경기, 대전)으로, 형평성 차원의 민원발생 우려됨.
 -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는 구비 확보하여 예외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중
- 국가 추진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예외지원 확대 권장

IV

세부 추진계획

□ 사업목적
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□ 사업기간 : 2016.1.1.~12.31.

□ 지원대상 : 기존지원대상 및 예외지원대상

- 기존지원 대상
 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- ※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 포함
-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과 예외지원 해당자 모두 충족한 대상
 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예외지원 해당자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|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|
|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| ④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|
| ⑤ 새터민 산모 | ⑥ 결혼이민 산모 |
| ⑦ 미혼모 산모 (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,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) | |

□ 주요 내용

-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- 서비스 제공 내용 : 산모 식사관리, 세탁물 관리, 신생아 돌보기 등

□ 지원 방법

업무절차	처리내용	업무주체
사업비 예탁	사회정보보장원에 사업비 예탁	시군구보건소
↓		
신청서 작성제출	서비스 신청	신청인→시군구 보건소
↓		
신청서 입력	‘행복e음’에 서비스 신청 정보 입력	시군구보건소
↓		
서비스 신청접수 및 계약서비스 실시	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	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
↓		
서비스실시	바우처 잔량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결제	제공인력, 서비스 이용자
↓		
서비스 비용지급	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금 지급	사회보장정보원

□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

(단위: 원)

구분	서비스가격 상한선	소득구간 (기준중위소득)	유형	정부 지원금	본인 부담금	지원 기간
단태아	860,000	50%이하	A-가형	600,000	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	10일
		50%초과~60%이하	A-나형	570,000		
		60%초과~80%이하	A-다형	520,000		
		80%초과(예외지원)	A-라형	450,000		
쌍생아	1,500,000	50%이하	B-가형	1,098,000		
		50%초과~60%이하	B-나형	1,035,000		
		60%초과~80%이하	B-다형	936,000		
		80%초과(예외지원)	B-라형	810,000		
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인 산모	2,200,000	50%이하	C-가형	1,620,000		
		50%초과~60%이하	C-나형	1,530,000		
		60%초과~80%이하	C-다형	1,400,000		
		80%초과(예외지원)	C-라형	1,200,000		

V

기 대 효 과

-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 분위기 확산
-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
- 서비스 제공기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 기대. 끝.